

# ‘한국형 제시카법’...“성범죄 예방 VS 실효성 의문”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범죄자 상당수 아동시설 근처 거주 지방 쏠림 현상 등 부작용 우려도 학부모 “범죄자와 아이 차단 기대” 전문가 “임시방편적 제도에 불과”

법무부가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가 시행되면 광주·전남 36명의 성범죄자가 집을 옮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율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방 쏠림 현상 등 부작용과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본보가 ‘성범죄자 알림e’를 분석한 결과 광주 18명·전남 18명이 제시카법을 적용받으면 거주지 제한 대상이다. 이 중 광주와 전남 각각 5명만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상당수는 강간 등 중범죄 전력이 있으며, 일부는 전과 5범 등 높은 재범률을 보였다. 어린이집에서 도보 1분, 약 50m 거리에 거주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피해자 연령을 19세 이하 미성년자로 넓히면 광주는 52%, 전남은 33%가량의 성범죄자가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에 살고 있었다. (반경 500m 범위에 학교 부지가 일부 겹치는 등의 사례도 포함한 수치) 나아가 피해자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거주지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광주 95%·전남 64%가량의 성범죄자가 이주 대상에 해당했다.

광주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인 이유는 전남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고 교육 시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전체 성범죄자 중 99.8%가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에 대한 반응도 극과 극이다. 광주·전남 학부모들은 해당 소식에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초등학교 자녀 2명을 키우는 진모(39)씨는 “뉴스를 보면 등·하굣길에도 아동대상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늘 불안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딸에게도 키즈 핸드폰을 사주고 위치추적 앱을 깔아놓았다”면서 “학교 근처에 범죄자를 살지 못하게 하면 아이들과 범죄자가 마주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범죄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강현아(42)씨는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아이를 보면 범죄 중독이 될 수 있기에 아이와 범죄자가 마주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지방에 성범죄자가 몰리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헌법 위배 소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작은 지방이나 시골에 성범죄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이 강화된다는 상징성과 불안감 해소

라는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성범죄자가 옮겨간 지역에 대해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부작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교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이는 수단·적절성과 필요성, 균형 등을 고려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위험 소지는 있으나 ‘한국에 거주하지 말라’ 등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덜’ 위험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핵심은 거리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재범 위험성 등 개별 특성에 감안해 법원이 구체적인 거주지 제한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에서 판결에 따른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판결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200m 이내’가 적절한 사람을 ‘500m 이내’ 거주 제한으로 판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 불안감 해소에 불과한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박다현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제시카법은 임시방편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면서 “위험한 사람을 보호 대상과 분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구조적 성차별과 왜곡된 성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게 성범죄이므로 단순 ‘분리’로는 성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비 기자 jubu.kang@jnilbo.com



북구보건소, 모기 유충구제 방역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예방팀 방역반원들이 15일 북구 중흥동의 한 다중이용 시설 정화소에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유충구제 방역을 하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정화조와 하수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양배 기자

## 학교·교육기관 등 불법촬영 20대 징역 5년

6곳 학생 등 40명 불법촬영·유포 “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 양성”

광주의 초·중학교와 교육기관 등 6개 건물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촬영(▷본보 지난해 10월11일자 1면)한 A(27)씨가 5년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

혜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신상공개 및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컴퓨터 유지보

수 관리회사 직원 신분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에 출입해 학생과 교직원 40명을 불법촬영했다.

A씨의 불법촬영 사실은 같은 해 9월19일 광주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실 직원이 학교 샤워실에 설치돼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신고가 들어온 학교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찍은 불법촬영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 10살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 모습을 촬영·유포한 점도 확인돼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사 강간·나체 사진 촬영 및 협박·성착취물 소지 등 A씨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성된 만큼 중형을 피하기 힘들다”며 “형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있는 점, 피해자 40명 중 1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양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